

제5장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



제5장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

사례 15

의결번호	제2015-44호
매체명	국민일보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2월 26일자 사회9면
기사제목	중고생까지 ‘허브마약’을...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○○마약은 흰 가루 물질인 원료를 물에 섞어 ○○이나 한약 재료 등 ○○ 식물에 뿌려 말린 뒤 ○○한다. (중략)

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‘○○스’ ‘○○기’ 등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해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SNS로 연락해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○g당 ○만~○만원을 받고 판매해 왔다. 판매액은 총 6000여만원이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, 사용량, 구입가격,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, 환각적 효능,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의 명칭, 구입가격, 사용방법, 구입 경로 등을 보도하였다.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사례 16

의결번호	제2015-64호
매 체 명	인터넷 인천일보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3월 9일자 사회면
기사제목	필로폰 버금가는 강한 환각... 유럽·美 오래전부터 규제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8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‘○○’ 잎(사진)은 아프리카 뿔(소말리아 지역)의 고산지대, 아라비아 남부와 동아프리카 해안에 걸쳐 재배되고 있다.

에티오피아와 케냐, 소말리아, 예멘 등에서는 수세기 동안 약한 자극 성분을 내거나 기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‘○○’ 잎을 씹었으며, 사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.

한 사람이 한 번에 ‘○○’ 잎을 씹는 양은 ○~○g으로 알려져 있다.

문제는 ‘○○’ 잎에 향정신성, 환각 효과를 주는 성분인 ‘○○○’과 ‘○○’이 있으며, 그 효과가 암페타민에 견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다.

○○○○○○은 국내에서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마약이다. ○○○○○○의 주성분이 ○○○○이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, 사용량, 구입가격,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, 환각적 효능,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특정 마약류의 명칭, 복용방법, 환각적 효능 등을 보도하였다.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사례 17

의결번호	제2015-92호
매 체 명	인터넷 문화일보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3월 11일자 사회면
기사제목	탤런트 김○○ 씨 등 마약 투약혐의 불구속 입건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‘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’, ‘○○기·○○스(마약 은 어) 판매’ 등의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, 필로폰 ○g당 ○만~○만원을 송금받은 뒤 박 씨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, 사용량, 구입가격,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, 환각적 효능,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, 구입가격 및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.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사례 18

의결번호	제2015-209호
매 체 명	대경일보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5월 15일자 사회4면
기사제목	신종 마약 상승 투약 외국인 무더기 검거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K 씨 등은 지난 2월 신원미상 캄보디아인으로부터 ‘○○’ 1정당 ○만원에 구입, 모텔과 주거지에서 ○○를 내 ○에 타 마시거나 ○○에 넣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. (중략)

L 씨 등은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대구 ○○공단과 ○○공단, ○○공단 등지에서 신원 불상의 필리핀 선원에게서 수 차례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다.

이들은 ○○○○ ○○ 위에 마약을 올려놓고 ○○○로 ○을 가해 증발하는 ○○를 ○○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.

한편 신종마약인 ○○는 세계 최대 밀매조직인 ○○가 개발해 2000년부터 국내로 유입된 마약으로, 필로폰 보다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더 강하며, 태국 등지에서 ○○ 형태로 생산된다.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, 사용량, 구입가격,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, 환각적 효능,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, 구입가격 및 복용방법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.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사례 19

의결번호	제2015-421호
매 체 명	인터넷 헤럴드경제
보도일시 및 위치	2015년 11월 20일자 뉴스면
기사제목	전자담배로 대마초 ○○ 신종 마약 ‘○○’ 경보… 편의성 때문 확산 빨라

1. 보도내용

「(전략) 속칭 ‘○○’라 불리는 대마 추출액을 전자담배 ○○○에 끼워 범행을 저지르는 이 같은 수법은 휴대가 간편하고 주변에서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.

‘○○’는 ○g에 약 ○만원 정도로 일반 대마초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비싸지만, 휴대가 간편하고 숨기기가 편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 (중략)

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, 구 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정문에 주차된 마약상 A 씨의 차 안에서 대마 추출액인 속칭 ‘○○’ 5그램을 구입했다. 구 씨는 구입 직후 도로에서 대마 추출액 ○g을 전자담배 ○○○에 집어넣고 ○○를 흡입했다. (이하 생략)」

2. 권고사항

언론은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, 사용량, 구입가격,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, 환각적 효능,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권고이유

위 기사는 마약류의 별칭, 사용량, 구입가격 및 사용방법 등을 보도하였다.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.

따라서 위 기사는 「시정권고 심의기준」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.

